

D.1. 가 점	③ 정부반영노력도 (가점: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특건 기관 미소재 지역 수검자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30%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 1.0
특건 기관 미소재 지역 수검자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50%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 0.8
특건 기관 미소재 지역 수검자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70%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 0.6
특건 기관 미소재 지역 수검자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80%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 0.4
특건 기관 미소재 지역 수검자수가 전국 또는 권역별 상위 8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0.2
지표정의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 공공서비스 기여를 유도		
평가내용		
☐ 평가방법 ○ 공단에 전송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기관 미소재 지역(특수건강진단 사각지대)의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수검자수 산정 ※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제외 ○ 고용노동부 지방청 단위로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을 권역으로 그룹화		
☐ 평가대상 ○ 전회 평가대상기간('21.1.1~'22.12.31), 금회 평가대상기간('23.1.1~'24.12.31) 중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 기간 내에 K2B로 결과 보고를 완료한 수검자		
확인사항		
○ 전산자료를 활용한 사전평가		

참고

특수건강진단기관 미소재 지역

구 분 (공단지사 기준)	계	선정 가능 대상 지역(시·군)
서울광역시	15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인천광역시 및 경기지역	15	강원도 철원군 인천시 옹진군, 강화군 경기도 과천시,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의왕시, 포천시, 하남시
광주광역시	28	전라북도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제주도 서귀포시
대구광역시	17	대구광역시 군위군,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부산광역시	15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상남도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대전세종광역시	18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청원군,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